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
----------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 의 자 : 남인순 · 김상희 · 조정식
추혜선 · 진선미 · 이학영
이찬열 · 김태년 · 표창원
윤소하 · 박남춘 · 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톱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톱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톱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톱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톱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톱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톱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바.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12조).
- 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4조).
- 카. 스토킹을 한 사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

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직작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 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2. “행위자”란 제1호의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 근지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제16조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에 연계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청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해당 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본다.

제12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톱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톱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법원이 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6조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신고 등 수사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용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 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2.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

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개의 스톱킹범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